

의안 검토보고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3. 안건요지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995. 3.

내 무 위 원 회

전문위원 정 진



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995. 3.

내무위원회 전문위원

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1995. 3. 8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. 3. 14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 안 이 유

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이 개정·공포(94. 12. 31)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가.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“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등록 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”를 “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”로 정비코자 함. (안 제3조 제1항 제1호)

나.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1항이 제1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코자 함. (안 제3조 제1항 제2호)

다.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6항 및 제11항이 제7항 및 제1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. (안 제6조 제2항 제1호)

3. 검토 의견

본 안건은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법 개정내용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으로는

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위원회 기능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“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”를 “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”로 개정하려는 것임.

결과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대상자와 공개대상자를 불문하고 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모두 심사를 하게 되겠음.

그리고 그외 개정안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5항의 신설로 조항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내용중 법 제8조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“제11항”을 “제12항”으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임.

따라서 본 개정안은 관련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중 조항만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